

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(제34조제2항 관련)

종 류	업 무 내 용
측 지 측 량 업	○기본측량으로서 국가기준점의 측량 및 지형·지물에 대한 측량 ○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
공 공 측 량 업	○공공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·지물에 대한 측량 ○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
일 반 측 량 업	○공공측량(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)으로서 토지 및 지형·지물에 대한 측량 ○일반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·지물에 대한 측량 ○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 ○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
연안조사측량업	○하천, 내수면, 연안지역 및 댐에 대한 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○기본측량의 성과로서의 국가기본도의 연장을 위한 연안조사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
항 공 촬 영 업	○항공기를 이용한 측량용 공간영상정보 등의 촬영·제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
공간영상도화업	○측량용 사진과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화기상에서의 지형·지물의 측정 및 묘사와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, 영상판독 및 현지조사
영 상 처 리 업	○측량용 공간영상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, 정사사진지도제작 및 입체영상지도의 제작과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, 영상분석·지리조사 및 제작, 데이터의 입력·출력 및 편집
수치지도제작업	○지도(수치지도 포함) 제작을 위한 지리조사, 영상판독, 데이터의 입력·출력 및 편집,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
지 도 제 작 업	○지도책자 등을 간행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지리조사, 데이터의 입력·출력 및 편집·제도(스크라이브 포함) ○지적편집도 제작
지하시설물측량업	○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과 데이터베이스 구축
지적측량업	○법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○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○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○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